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결 정 문

사건번호: KR-0800028
신청인: 대한민국 특허청
피신청인 : otchanggo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대한민국 특허청,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정부
대전청사 4동

대리인: 특허법인 화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40-6 남강빌딩 11층

피신청인: otchanggo,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승동
130-34(분쟁 도메인이름 관리자 yeji Lee)

분쟁도메인이름은 “특허청.com(XN--OX6BP4IEXC.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6번지 누리꿈스퀘어비즈니스타워 16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의 2008년 8월 29일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한다)인 인터넷주소분쟁조

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08년 8월 29일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8년 9월 1일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08년 9월 1일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 (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고, 신청서상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2008년 9월 1일 보정을 요청하였고, 신청인 대리인은 2008년 9월 4일 신청서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2008년 9월 4일 센터는 “신청서 전송 표지” 를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2008년 9월 4일 동기 우편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여 2008년 9월 5일 도달되었음을 배달증명우편으로 확인하였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을 2008년 9월 25일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08년 9월 26일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미제출 통지를 2008년 9월 29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2008년 9월 29일 센터는 이 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1인 조정부로서 최성준 조정위원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08년 10월 1일 최성준 조정위원은 조정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받아 2008년 10월 2일 조정부 구성예정통지를 하였고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2008년 10월 8일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센터는 관련 서류 일체를 2008년 10월 8일 조정부에 송부하였고 2008년 10월 9일 조정인에게 도달하였음을 배달증명 우편을 통해 확인하였다.

3. 사실관계

정부조직법(법률 제8867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32조 제5항). 신청인은 1949. 5. 23. 상공부의 외국(外局)인 ‘특허국’ 으로 시작하여 1977. 3. 12. 상공부장관 소속의 ‘특허청’ 으로 된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 까지 30년이 넘게 같은 명칭을 사용해 오고 있다. 특허청은 1관 8국 51과 16팀 및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로 구성되어 있고,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1,511명이다. 특허청의 주된 업무는,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소관 심사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 출원의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 조사,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등이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3. 5. 25.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는데, 관리자를 yejiLee로, 연락이메일주소를 green1614@naver.com으로, 연락처를 서울 종로구 동숭동 130-34로 신고하였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특허청’ 은 대한민국의 국가 행정기관인 신청인의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신청인은 2008. 6. 24. 도형과 ‘특허청’ 이라는 문자가 결합된 업무표장들을 등록하였으며, 2003. 9. 1. 특허청.kr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는바,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등록 업무표장들과 매우 유사하고, 피신청인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갖고 있지 아니하며, 피신청인은 자신의 실명,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을 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삼성전자.com’ 을 비롯하여 여러 유명 기업의 상호들이나 상표들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은 피신청인에 의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이전하여야 한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있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A. 신청인의 명칭 및 업무표장과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으로서, ‘특허청’이라는 명칭을 1977년부터 30년 이상 사용하여 옴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특허청을 잘 알고 있으며,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자신의 명칭인 ‘특허청’이라는 문자부분과 여러 가지 형태의 도형부분이 결합된 표장 4개를 2007. 9. 5. 업무표장(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등록출원하여 2008. 6. 24. 그 등록을 받았다.

그런데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 중 .com을 제외한 ‘특허청’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행정기관인 신청인의 명칭과 동일하고, 또한 신청인의 등록 업무표장들 중 문자부분과 동일하여 신청인의 등록 업무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기도 하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래 그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한 사실이 없고,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하여 자신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의 연락처(주소)가 서울 시내이고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서울 소재 등록기관에 등록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은 서울 적어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 보이는데, 이러한 피신청인이 특허청의 명칭 그 자체를 그대로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한 점, 피신청인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면서 자신의 성명, 상호 등 실명을 밝히지 아니한 점, 피신청인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5년이 경과하도록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일반인이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이 사용하는 도메인이름들 중 하나로 오인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만일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가 개설된다면 위 웹사이트의 내용에 따라서는 신청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도 매우 높다) 신청인으로서는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바,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이 위와 같은 입장에서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매수하려 할 것으로 예상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생각에서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

앞서서 등록하였을 여지가 많아 보이는 점,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후이즈 정보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4. 6. 9.부터 2005. 11. 27.까지 사이에 역시 실명을 밝히지 아니한 채 우리나라 및 전 세계의 유명 상호와 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도메인이름 “삼성전자.com”, “삼성전자.net”, “대우전자.com”, “엘지전자.com”, “미래에셋.com”, “베니건스.com”, “배스킨라빈스.com”을 등록하였고, 위 도메인이름들을 보유하고 있다가 센터로부터 본 건 분쟁해결신청서 및 보정서를 송달받은 직후인 2008. 9. 10. 위 도메인이름들중 ” 삼성전자.net”을 제외한 도메인이름들을 신청외 제3자에게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위 보정서에 피신청인이 위 도메인이름들을 등록,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있자, 피신청인은 이로 인하여 본 건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급히 위 도메인이름들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이 피신청인에 의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음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6. 결정

위에서 검토한 바에 따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인 <특허청.com(XN--OX6BP4IEXC.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최 성 준
1인 조정부

결정일: 2008년 10월 23일